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5가단539941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1. A

2. B

3. C

4. D

5. E

6. F

변론 종결2017. 4. 6.

판결 선고2017. 4.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9,829,980원과 그중 59,720,160원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5. 8.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6. 9. 1.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 E, F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59,720,160원과 이에 대한 2015. 5. 16.부터 2016. 9.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에 대하여도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농협은행은 주택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의 지위에서 2013. 1. 31.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5,670만 원, 보증기간 2013. 2. 1.부터 2015. 2. 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2. 1. 농협은행에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6,300만 원을 변제기 2015. 2.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3) 피고 A는 2014. 3. 20. 이자 연체로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5. 15.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대출원리금 59,720,16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4) 한편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이행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5. 2. 3.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15. 5. 14.까지 101일간의 미이행 금액 5,670만 원에 대한 위약금 109,820원($56,700,000\text{원} \times 7/1,000 \times 101/365$)이 발생하였다. 또 피고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 비율은 2012. 12. 1.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8%이다.

나. 피고 A 등의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행위 등

(1) 피고 A, C, D, E, F 등은 농협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그 재원은 은행 자체 자금으로 마련하지만, 원고가 대출금의 일부를 보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대출에 비하여 심사절차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A는 근로자전세자금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실제로 피고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G 2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26.경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한 다음, 이와 함께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농협은행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농협은행과 위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위와 같은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고 D, E 등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303 판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전적으로 어머니인 피고 C에게 맡겼고, 사기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C: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과 추가보증료를 합한 59,829,980원(59,720,160원 + 109,820원)과 그중 위 원금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6. 9. 1.까지는 연 8%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피고 A와 공모하여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6,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A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농협은행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대위변제 원금 59,720,160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6. 9.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 A가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약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8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고, 이후 위 대출금이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 A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반환하는 등 적어도 과실로나마 피고 A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다른 피고들과 함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B가 고의로 피고 A 등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과연 피고 B가 과실로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어머니인 피고 C의 권유로 2009. 12. 17.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지만, 거주지와 직장이 모두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 C에게 그 관리를 맡겼고, 이에 따라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하는 등 전적으로 관리한 사실, 피고 C는 피고 A 등과 공모하여 2012. 12. 26.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C는 소지하고 있던 피고 B의 도장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고, 피고 B 이름으로 계약금(900만 원) 영수증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는 그날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 C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주었을 뿐인 사실, 그 무렵 피고 B는 농협은행 직원의 방문을 받고 피고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는지 확인요청을 받고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 A는 2013. 2. 1. 농협은행에서 대출금 6,300만 원 받자 이를 바로 피고 B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피고 B는 그날 피고 C로부터 피고 A가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임대차계약 해제를 원하니 이를 반환하여 주라는 요청을 받고 바로 피고 A 앞으로 6,3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었고, 이에 따라 피고 A 등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도 피고 C가 전적으로 알아서 한 것인 점, ② 피고 B는 피고 C를 통해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한 것으로 믿고 농협은행의 '임대차조사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임대차조사서'에는 그것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 맨 위의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서 담보시징구)'라는 문구는 작성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농협은행 직원도 위 '임대차조사서'를 작성하는 취지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편취

가능성 등에 관한 설명은 물론, 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이를 은행에 알려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B는 피고 A가 대출금을 받아 입금하자 그것이 진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후 피고 C로부터 피고 A가 계약 해제를 원하니 돌려주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그대로 믿고 다시 전액을 피고 A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B가 피고 A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것은 피고 A 등의 사기행위가 끝난 이후이기도 하다), ⑤ 피고 B로서는, 설령 피고 A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농협은행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A가 계약해제를 요청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을 몰취하는 것은 몰라도(다만 피고 B는 피고 C가 계약금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반환하는 금액은 같을 것이다), 보증금의 반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그 보증금은 당연히 피고 A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의 입장에서 어머니인 피고 C가 피고 A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 대출금을 편취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조사서' 등을 작성하였다거나 피고 A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 B가 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피고 A 등이 대출금을 편취한 이후로서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에게 과실로 인한 방조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원고의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가 어머니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 밖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김인택